

부속서 III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필리핀

목록 가

주해

1. 이 목록은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따른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10.4조(최혜국 대우)

다.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그리고

라.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이 목록 및 목록 나는 다음과 같이 두 목록 접근방식과 함께 네거티브 목록 방식을 따른다.

가. 이 목록은 동결 의무 대상이지만 래킷 메커니즘 대상은 아닐 기존의 비합치 조치와 관련된 약속을 규정한다. 그리고

나. 목록 나 는 분야, 하위 분야 및 활동의 조치와 관련된 정책 유연성을 규정한다.

3. 필리핀은 이 유보목록의 발효일부터 24개월의 기간 동안 목록 가에 규정된 대로 자신의 모든 유보를 추가,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비합치 조치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해야 한다. 목록 가의 모든 추가, 철회 또는 수정은 관련 법과 규정을 포함하여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할 기탁처에 제출될 것이다. 그러한 유보는 그러한 통보를 하는 즉시 이 유보목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유보를 해석할 때,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조치내용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산업, 생산품, 또는 활동을 지칭한다.

다. **산업분류**는 제조업, 농업, 수산업, 임업, 광업 및 채석업에 대한 국제표준산업분류(이하 “ISIC” 라 한다) 제3차 개정안에 따라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을 지칭한다. 유보가 ISIC에 정확히 합치하지 않는 경우, 필리핀은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유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라. **정부 수준**은 유보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명시한다.

마. **의무유형**은, 각 경우에 맞게, 열거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금지 및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칭한다.

바. **조치내용**은 유보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금지 및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지칭한다. 그리고

사. **조치근거**는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지칭하고, 투명성 목적으로만 적시된다.

5. 유보를 해석할 때,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조치내용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6. 이 주해는 이 목록의 일부를 구성한다.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p>국내 회사의 설립</p> <p>가. 회사 설립자는 모두 법정연령에 도달한 자연인으로, 그 수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이다.</p> <p>나. 회사 설립자와 이사의 과반수는 필리핀 거주자이다. 그리고</p> <p>다. 회사의 서기(Corporate Secretary)는 필리핀의 시민권자이고 거주자이다.</p> <p>부분적으로 국유화된 활동 및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실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p> <p>부분적으로 국유화된 활동에 종사하는 공공사업 기업 또는 회사의 경우, 그러한 회사나 협회의 대표 및 모든 임원과 관리자는 필리핀 시민권자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이사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는 그 기업의 자본에서 그들의 비례 주식으로 제한된다.</p> <p>협동조합의 설립</p> <p>외국인 지분은 허용되지 않는다.</p> <p>국내 및 수출 기업</p> <p>중소 국내시장 기업은 필리핀 국민에게 유보된다. 다만, 필리핀은 요건 및 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중소 국내시장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최대 40퍼센트까지 허용할 수 있다.</p> <p>법에 의하여 달리 결격 사유가 없는 필리핀 비국민은 영업을 하거나 국내 기업에 그 자본의 최대 100퍼센트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p> <p>가. 「1991년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제한 목록</p>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외의 분야에서 국내시장 기업에 투자하고 있어야 한다. 또는
나. 「1991년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제한 목록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의 목록 가와 목록 나에 해당하지 않는 생산품 및 서비스를 수출 기업에 투자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더 나아가, 기존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대로, 신청인의 국가 또는 주는 필리핀 시민권자와 회사가 그곳에서 영업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주:

“필리핀 국민”이란 필리핀 시민권자 또는 필리핀 시민권자가 완전히 소유한 국내 파트너십이나 협회, 또는 필리핀 법에 따라 조직되고 의결권이 있는 사외발행주식의 최소 60퍼센트를 필리핀 시민권자가 소유하고 보유한 회사, 또는 국외에서 조직되고 「회사법」에 따라 필리핀에서의 영업으로 등록했으며 필리핀인 또는 기금의 최소 60퍼센트가 필리핀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연금 기금 또는 그 밖의 직원 퇴직·퇴사 수당의 수탁자인 필리핀 국민이 의결권이 있는 사외발행주식의 100퍼센트를 완전히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와 그 회사의 필리핀인이 아닌 주주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그 회사가 필리핀 국민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두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사외발행주식의 최소 60퍼센트를 필리핀 시민권자가 소유하고 보유해야 하며 두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60퍼센트가 필리핀 시민권자여야 한다.

앞서 언급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실체는 “필리핀 비국민”으로 간주된다.

“수출 기업”은 제조업자나 가공업자 또는 서비스 기업(관광을 포함한다)이 그 산출량의 6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또는 무역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품을 구매하고 그러한 구매의 6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거주 대리인의 지정

외국 회사는 필리핀 거주자이고 소환장 및 그 밖의 법률 문서가 송달될 수 있는 인을 지정하는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지점 및 지역 운영 본사

외국 기업은 지역 운영 본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 운영 본사는 적절한 정부 기관에도 등록하고 관련 규칙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필리핀 헌법 - 필리핀 회사법(Batas Pambansa Blg. 68) - “안티더미법” 으로 달리 알려진, 대통령령 제715호에 의하여 개정된 연방법 제108호 일정 권리, 특히 또는 특권의 국유화에 관한 법을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 그리고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 - 개정되는 바에 따른 공화국법 제7042호 1991년 외국인 투자법, 그리고 그 시행규칙과 규정 - 공화국법 제9520호 2008년 필리핀 협동조합법 - 공화국법 제8289호 및 제9501호에 의하여 개정된 공화국법 제6977호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법 - 공화국법 제9178호 2002년 바랑가이 소규모사업법 - 행정명령 제226호 1987년 종합투자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공화국법 제8756호 다국적기업의 지역 또는 권역 본사, 지역 운영 본사 및 지역 창고에 대한 기간, 조건 및 면허요건을 규정하는 법 - 증권거래위원회 고시 및 의견
------	---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조치내용	:	<p>필리핀은 자신의 군도 수역,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자신의 해양 자산을 보호하고, 그 이용과 향유를 필리핀 시민권자에게 배타적으로 유보한다.</p> <p>천연자원의 소규모 이용은 양어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필리핀 시민권자에만 허용되며, 강, 호수, 만 및 석호에서의 생계형 어부와 어업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p>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필리핀 헌법 - 공화국법 제7160호 1991년 지방정부법 - 공화국법 제7942호 1995년 필리핀 광업법 - 공화국법 제7076호 1991년 국민 소규모 광업법 - “1998년 필리핀 수산업법” 으로 달리 알려진, 공화국법 제8550호를 개정하는 공화국법 제10654호 불법·미신고·미규제 어업의 금지·저지·폐지 및 그 밖의 목적에 관한 법에 의하여 개정된 공화국법 제8550호 1998년 필리핀 수산업법 - 1975년 대통령령 제705호 필리핀 개정산림법

분야	:	수산업 및 양식업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ISIC 050 어업, 양식업 및 어업에 부수적인 서비스 활동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조치내용	:	<p>필리핀 수역에서의 수산업 및 수생 자원의 이용 및 개발은 필리핀인에게 배타적으로 유보된다.</p> <p>지방 어업</p> <p>지방 수역에서의 모든 수산업 활동은 지방 수산업인 등록명부에 그렇게 기재된 지방 수산업인과 그들의 협동조합 또는 단체에 의하여 활용된다.</p> <p>상업 어업</p> <p>상업 어선 면허는 요건과 특정 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필리핀 시민권자, 파트너십 또는 필리핀에서 적법하게 등록되고 자본금¹의 최소 60퍼센트를 필리핀 시민권자가 소유한 협회, 협동조합이나 회사를 제외하고 발급되지 않는다.</p> <p>외국인이 소유한 선박은 필리핀 수역 전역에서 어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p> <p>주: 상업 어선 및 어구 면허와 그 밖의 허가 발급에는 일시 중지가 있다.</p> <p>양어지</p> <p>주로 개발 가능한 것으로 선언될 수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필리핀 시민권자 또는 수산업인 협동조합 또는 단체를 제외하고 양어지 임대 계약이 발급되지 않는다. 그러한 시민권자 또는 수산업인 협동조합이나 단체가 부재하는 경우, 요건과 특정 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필리핀에서 적법하게 설립되고 자본금의 최소 60퍼센트를 필리핀 시민권자가 소유한 회사에 양어지 임대 계약이 부여될 수 있다.</p> <p>양식업</p>

¹ 이 유보에 따른 외국인 지분 참여는 목록 나 의 유보 1 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p>양식업은 요건과 특정 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필리핀 시민권자 및 필리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자본금² 또는 이익의 최소 60퍼센트를 필리핀 시민권자가 소유한 회사나 협회에 유보된다.</p>
조치근거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법 제10654호에 의하여 개정된 공화국법 제8550호 1998년 필리핀 수산업법 - 대통령령 제704호(1975년 5월 16일) 1975년 수산업령 - 공화국법 제7160호 1991년 지방정부법 - 집행공고

² 이 유보에 따른 외국인 지분 참여는 목록 나의 유보 1 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분야	:	광업 및 채석업
하위 분야	:	소금 생산
산업분류	:	ISIC 1422 소금 채취업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특정한 요건과 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법정연령에 도달한 필리핀 시민권자 또는 필리핀 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고 자본 ³ 의 60퍼센트를 필리핀 시민권자가 소유한 회사, 협회 또는 협동조합만이 필리핀 정부와 소금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치근거	:	- 1987년 필리핀 헌법 - 개정되는 바에 따른 환경천연자원부(DENR) 집행명령 제 1998-67호

³ 이 유보에 따른 외국인 지분 참여는 목록 나의 유보 10 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분야	:	광업 및 채석업
하위 분야	:	소규모 광업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조치내용	:	소규모 광업은 개별적으로 또는 그 밖의 필리핀 시민권자의 동행하에 필리핀 정부로부터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협동조합을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필리핀 시민권자에게 유보된다. 그들이 생산한 광석과 광물의 가공은 필리핀 시민권자에게 유보된다.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필리핀 헌법 - 공화국법 제7942호 1995년 필리핀 광업법 - 공화국법 제7076호 1991년 국민 소규모 광업법 - 공화국법 제7586호 1992년 국가통합보호구역체계 - 공화국법 제7160호 1991년 지방정부법 - 집행공고

분야	:	제조업
하위 분야	:	방위 관련 제조업 및 수리 활동, 폭약 및 그 밖의 화약 장치 제조, 그리고 위험 약물
산업분류	:	ISIC 중분류 2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ISIC 2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업 ISIC 소분류 2927,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ISIC 중분류 35,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조치내용	:	<p>총포, 총포탄, 살상무기, 군수품, 폭발물, 화약류 및 유사 물품의 제조, 수리, 저장 또는 유통과 같은 방위 관련 활동은 필리핀 정부의 사전 통관 및 승인을 전제로, 필리핀 시민권자, 필리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고 자본의 60퍼센트를 필리핀 시민권자가 소유한 회사, 단체 또는 협동조합으로만 제한된다.</p> <p>폭약 및 화약 장치의 제조 또는 도소매 거래를 위한 면허나 허가는 (가)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갖춘 필리핀 시민권자 또는 (나) 필리핀 시민권자가 100퍼센트 자본을 소유한 실체에만 발급된다.</p> <p>위험 약물의 제조는 필리핀 정부의 사전 통관 및 승인을 전제로, 필리핀 시민권자 또는 필리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고 자본의 60퍼센트를 필리핀 시민권자가 소유한 회사, 협회 또는 협동조합으로만 제한된다.</p>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필리핀 헌법 - 공화국법 제8179호 및 그 시행규칙과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공화국법 제7042호 1991년 외국인투자법 - 공화국법 제9165호 2002년 포괄적위험약물법 - 공화국법 제7183호 폭약 및 그 밖의 화약 장치의 판매·제조·유통·이용 규제법

분야	:	제조업
하위 분야	:	원자력시설
산업분류	:	ISIC 중분류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조치내용	:	<p>요건과 조건 준수를 전제로, 외국인, 외국 회사 또는 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나 그 밖의 실체 또는 외국인에게는 원자력시설을 취득, 소유, 또는 운영하는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회사나 실체는 그 자본금의 최소 60퍼센트를 필리핀 시민권자가 소유한 경우, 외국인, 외국 회사 또는 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는다.</p> <p>주:</p> <p>“원자력시설”이란 필리핀 정부가 국익이나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중대한 그러한 수량이나 방식으로 원자력 물질을 생산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장비나 장치를 말한다.</p>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법 제5207호 1968년 원자력 규제 및 책임법 - “원자력시설과 물질에 관한 면허 및 규정, 원자력 피해 책임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그 밖의 목적에 관한 법”으로 명명되는 공화국법 제5207호의 일부 절을 개정한 대통령령 제1484호

분야	:	제조업
하위 분야	:	대중매체, 인쇄 및 출판
산업분류	:	ISIC 중분류 22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조치내용	:	<p>대중매체의 소유 및 경영은 필리핀 시민권자 또는 그러한 시민권자가 완전히 소유하고 경영하는 회사나 협회로 제한된다.</p> <p>주:</p> <p>“대중매체”는 모든 신문, 정기간행물, 잡지, 저널 및 출판물과 그에 포함된 모든 광고를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인쇄 매체, 그리고 입간판, 네온사인 및 유사물, 그리고 모든 측면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및 그 밖의 모든 영화나 라디오 프로모션과 광고를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송 매체를 지칭한다.</p>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필리핀 헌법 - 대통령령 제1018호 대중매체의 소유 및 경영을 필리핀 시민권자에게 제한 및 그 밖의 목적 - 대통령 및 집행공고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필리핀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인은 정부의 승인을 받고 다음에 관련된 특정 조건을 준수를 전제로 한다: (1) 기간, (2) 고용 지위, (3) 현지인 채용 불가능, (4) 필리핀인을 위한 견습 훈련, 그리고 (5) 총 인력 대비 외국 국민의 고용 비율.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필리핀 헌법 - 필리핀 회사법(Batas Pambansa Blg. 68) - “안티더미법”으로 달리 알려진, 대통령령 제715호에 의하여 개정된 연방법 제108호 일정 권리, 특허 또는 특권의 국유화에 관한 법을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 그리고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 - 개정되는 바에 따른 공화국법 제7042호 1991년 외국인 투자법 및 그 시행규칙과 규정 - 대통령령 제442호 필리핀 노동법 - 개정되는 바에 따른 공화국법 제7916호 1995년 특별경제구역 - 행정명령 제226호 1987년 종합투자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공화국법 제8756호 다국적기업의 지역 또는 권역 본사, 지역 운영 본사 및 지역 창고에 대한 기간, 조건 및 면허 요건을 규정하는 법 - 증권거래위원회 공고 및 의견

분야	:	제조업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다음 생산품의 가공은 준수 요건과 조건을 전제로, 필리핀 시민권자 또는 자본의 최소 60퍼센트 ⁴ 를 필리핀 시민권자가 소유한 회사 또는 협회로만 제한된다. 1. 구리의 선 2. 구리의 봉, 시트, 스트립 3. 황동, 청동 및 그 밖의 구리 합금 4. 니켈 선철, 그리고 5. 페로니켈
조치근거	:	- 1987년 필리핀 헌법 - 공화국법 제7942호 1995년 필리핀 광업법 - 광물 자원 활용에서 환경 보호 및 책임 광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지침을 규정하는 필리핀 광업 분야의 개혁 제도화 및 시행에 관한 2012년 일련의 행정명령 제79호 - 개정되는 바에 따른 행정명령 제226호 1987년 종합투자법 - 대통령 및 집행공고

⁴ 이 유보에 따른 외국인 지분 참여는 목록 나의 유보 10 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조치내용	:	면허 계약에 따라 부여된 요율 또는 로열티 금액의 채택은 필리핀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정부 기관이 부과하는 준수 요건과 승인, 조건의 대상이다.
조치근거	:	집행공고

목록 나

주해

1. 이 목록은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필리핀이 다음에 따른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다.
 - 가. 제10.3조(내국민 대우)
 - 나. 제10.4조(최혜국 대우)
 - 다.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그리고
 - 라.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이 목록 및 목록 가는 다음과 같이 두 목록 접근방식과 함께 네거티브 목록 방식을 따른다.
 - 가. 목록 가는 동결 의무 대상이지만 래킷 메커니즘 대상은 아닐 기존의 비합치 조치와 관련된 약속을 규정한다. 그리고
 - 나. 이 목록은 분야, 하위 분야 및 활동의 조치와 관련된 정책 유연성을 규정한다.
3. 각 유보는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 분야**는 유보된 특정 산업, 생산품 또는 활동을 지칭한다.
 - 다. **산업분류**는 제조업, 농업, 수산업, 임업, 광업 및 채석업에 대한 국제표준산업분류(이하 “ISIC” 라 한다) 3차 개정안에 따라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을 지칭한다.

유보가 ISIC에 정확히 합치하지 않는 경우, 필리핀은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유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명시한다.
- 마. **의무의 유형**은 각 경우에 맞게, 열거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금지,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무를 지칭한다.
- 바. **조치내용**은 유보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금지,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지칭한다. 그리고
- 사. **조치근거**는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지칭하고, 투명성 목적으로만 적시된다.

4. 유보를 해석할 때,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조치내용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5. 이 주해는 이 목록의 일부를 구성한다.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필리핀은 필리핀의 완전한 통제와 감독을 받는 토지, 수자원 및 천연자원의 소유, 보존, 탐사, 개발, 보호, 그리고 활용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일반적 국가 복지에 대한 실제 기여에 기초하여 광물, 석유 및 그 밖의 광물유의 대규모 탐사,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기술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계약을 외국인 소유 회사와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에서 필리핀은 현지 과학기술 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장려한다.
조치근거	:	1987년 필리핀 헌법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p>필리핀은 특정 분야의 투자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경제기획기관의 권고에 따라, 국익이 요구할 때,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국가 경제와 유산을 다루는 권리, 특권 및 양허를 부여하는 경우, 필리핀은 적격 필리핀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더 나아가, 필리핀은 공공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부여하는 특허, 증명서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승인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필리핀은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고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필리핀 관할권에서 그리고 국가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권한을 행사한다.</p>
조치근거	:	1987년 필리핀 헌법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필리핀은 지방정부 단위 ⁵ , 코르디예라 자치구, 그리고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 및 문화공동체나 원주민의 선조 영토와 토착 지식 체계 및 관습 ⁶ 에 대한 권리의 집행 및 보호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 또는 메커니즘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1987년 필리핀 헌법 - 공화국법 제8731호 1997년 원주민 권리법 - 공화국법 제7160호 1991년 지방정부법 - 코르디예라 행정구를 창설하고 그에 대한 자금을 책정하며 그 밖의 목적에 관한 일련의 1987년 행정명령 제220호 - 공화국법 제11054호 무슬림 민다나오 방사모로 자치구 기본법 - 원주민에 관한 국가위원회(NCIP) 집행명령 제3호 일련의 2012년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의 행사 및 관련 절차에 관한 행정명령 및 집행공고에 관한 개정 지침

⁵ 지방정부 단위의 조치 및 메커니즘은 그들 각자의 영역적 관할권에서 일반 복지, 기초 서비스 및 시설 제공, 자원 생산과 수익 창출을 포함한다.

⁶ 이는 민족 간에, 그리고 민족, 그들의 토지, 자원 환경 간에 관계 패턴이 구현되고 시간에 따라 발전해온 고유한 지식의 총체로 구성된 체계, 제도, 메커니즘 및 기술이며,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종교적 영역을 포함할 수 있고, 원주민이 주어진 사회문화 및 생물물리학적 조건에서 생존하고 번창할 수 있었던 적응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 특정한 요구에 대한 반응과 원주민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그러한 관계의 영역을 포함한다.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조치내용	: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지분 및 부채)와 외국인 용자를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에 등록하는 것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⁷ .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필리핀 헌법 - 공화국법 제7653호 신중앙은행법 - 공화국법 제7160호 1991년 지방정부법 - 공화국법 제8182호 1996년 공적개발원조법 및 공화국법 제8555호에 의하여 개정된 공화국법 제4860호 1996년 해외차입법 - 공화국법 제8179호에 의하여 개정된 공화국법 제7042호 1991년 외국인투자법 - 개정되는 바에 따른 공화국법 제245호 공공지출을 충족하기 위한 재무장관의 차입 승인법 - 공화국법 제8799호 증권규정법 - 필리핀 중앙은행 고시를 포함하는 집행공고(예: 개정되는 바에 따른 외환 거래 규정 매뉴얼,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규정 매뉴얼)

⁷ 자본의 본국 송금 및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이익 및 수익의 송금에 필요한 외환이 공인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되는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외국인 투자(지분 및 부채)의 등록이 요구된다.

대출에 필요한 외환을 공인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 대출에 대한 필리핀 중앙은행의 승인과 등록이 요구된다. 다만, 외환 서비스의 조달원을 불문하고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과 등록이 요구되는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가. 공공 부채, 그리고 나. 민간부채 중에서, 1) 정부회사 또는 정부금융기관이나 공인된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 또는 2) 현지 은행이 제공하고 역외 대출이나 예금으로 직접 조달되거나 담보가 설정된 것.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필리핀은 정부 자산 민영화 프로그램 및 철강에서 자산 매각 요건, 개척 ⁸ 활동 ⁹ , 그리고 민관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 또는 메커니즘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1987년 필리핀 헌법 - 개정되는 바에 따른 공화국법 제7042호 1991년 외국인 투자법 및 그 시행규칙과 규정 - 개정되는 바에 따른 행정명령 제226호 1987년 종합투자법 - 공화국법 제9184호 정부조달개혁법 - 공화국법 제7718호 “민간 부문 및 그 밖의 목적에 의한 기반시설사업의 자금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를 승인하는 법”으로 명명되는 공화국법 제6957호의 일부 절을 개정한 법 - 공화국법 제9136호 2001년 전력산업개혁법 - 쌀·옥수수 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협회, 회사 또는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승인 및 그 밖의 목적에 관한 1973년 대통령령 제194호 및 그 시행규칙과 규정 - 행정명령 및 집행공고

⁸ “개척 기업”이란 등록된 기업으로, (1) 필리핀에서 상업적 규모로 생산된 적이 없거나 생산되지 않고 있는 상품, 생산품, 원자재 또는 원재료의 단순한 조립이나 포장이 아닌 제조, 가공 또는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2) 어떠한 요소, 물질 또는 원재료를 설계, 공식, 방식, 방법, 공정 또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필리핀에서 새롭고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다른 원재료나 완제품으로 생산 또는 변형하는 기업, 또는 (3) 언제든지 적절한 경우, 위원회가 적절한 부서와 협의하여, 프로젝트의 자금 및 그 밖의 사회적 혜택을 위하여 공표된 구체적인 국가 식량 및 농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국가적 목표의 달성에 실현 가능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사전에 결정한 산업적 식품가공 측면을 포함하는 농업, 임업 및 광업 활동 및/또는 서비스를 추구하는 기업, 또는 (4) 생산,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비재래형 연료를 생산하거나 비재래형 에너지를 활용하는 장비를 제조하거나 석탄이나 그 밖의 비재래형 연료나 에너지원으로 이용 또는 변환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위의 모든 경우에서 완제품은 투자의 위험과 규모를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국내산 원재료의 상당한 사용 및 가공을 수반하거나 수반할 것이다. 다만, 더 나아가, 위의 정의는 저개발지역 기업에 부여된 권리와 인센티브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한하지 않는다.

⁹ 행정명령 제 226 호(1987년 종합투자법)에 따른 등록 기업은 등록일로부터 30년 내 또는 프로젝트의 수출 잠재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필리핀 국민의 지위를 획득할 의무가 있다.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최혜국 대우
조치내용	:	<p>필리핀은 다음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 또는 메커니즘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필리핀이 당사자인 기존의 모든 양자, 지역 또는 국제 약정 또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에 따라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되는 특혜 대우¹⁰, 그리고</p> <p>나. 아세안 회원국 간의 모든 협정이나 약정에서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되는 기존의 또는 미래의 모든 특혜 대우</p> <p>필리핀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을 포함하는 모든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광업 나. 수산업, 또는 다. 임업</p>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정책 - 국제 협정 또는 약정

¹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권리는 관련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대한 후속 검토나 개정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차등 대우로 확대된다.

분야	:	임업 및 제조업
하위 분야	:	임업, 벌목 및 목재 가공
산업분류	:	ISIC 중분류 0200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 활동 ISIC 중분류 201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ISIC 중분류 202 - 나무, 코르크, 짚 및 조물 재료의 생산품 제조업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필리핀은 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면허 계약, 면허, 임대 또는 허가에 따라 정당하게 승인을 받은 인이 아닌 한, 모든 삼림 및 목초지에서의 모든 활동 또는 모든 목재나 임산물 가공 공장의 설립, 설치, 증설 및 운영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1987년 필리핀 헌법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대통령령 제705호 필리핀 개정임업법 - 공화국법 제7160호 1991년 지방정부법 - 공화국법 제11054호 무슬림 민다나오 방사모로 자치구 기본법 - 코르디예라 행정구 창설에 관한 일련의 1987년 행정명령 제220호 - 행정명령 및 집행공고

분야	:	수산업 및 양식업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ISIC 050 어업, 양식업 및 어업에 부수적인 서비스 활동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조치내용	:	필리핀은 수산업 및 양식업 품종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외국 실체나 개인, 외국 기관과 연계된 필리핀 시민권자 또는 외국 자금으로 수생 야생생물에 관한 학술 연구를 수행할 필리핀 시민권자의 경우, 연구 협업 기관 또는 상대 기관으로서의 현지 기관과 현지 기관장의 동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치근거	:	- 개정되는 바에 따른 공화국법 제8550호 1998년 필리핀 수산업법 - 대통령령 제704호 1975년 수산업 칙령 - 무슬림 민다나오법 제86호 1999년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 수산업 및 수생법 - 공화국법 제7160호 1991년 지방정부법 - 공화국법 제11054호 무슬림 민다나오 방사모로 자치구 기본법 - 코르디예라 행정구 창설에 관한 일련의 1987년 행정명령 제220호 - 수산업 집행명령 및 공고

분야	:	제조업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필리핀은 공정이 혼란, 인구 과밀 또는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특정 제조 산업을 대상으로, 합리화 프로그램 ¹¹ 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시행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개정되는 바에 따른 행정명령 제226호 1987년 종합투자법

¹¹ 예시: 혁신, 기술이전, 환경 보호 및 중소기업 개발을 지원하는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자동차 개발 프로그램의 정책과 방향을 증대하고 증진하는 행정명령 제182호에 따른 포괄적 자동차 부흥 전략(CARS) 프로그램

분야	:	광업 및 채석업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필리핀은 광물 자원의 탐사, 개발 및 활용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 또는 메커니즘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필리핀 헌법 - 공화국법 제7942호 1995년 필리핀 광업법 - 광물 자원 활용에서 환경 보호 및 책임 광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지침을 규정하는 필리핀 광업 분야의 개혁 제도화 및 시행에 관한 행정명령 제79호 - 공화국법 제7586호 1992년 국가통합보호구역체계법 - 비콜 지방 관광기본계획에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알바이 카그라라이 섬을 제외하는 포고령 제1250호(1998년 6월 9일) - 광물 탐사, 개발, 활용 신청의 처리 및 승인에 대한 잠정 절차를 규정하는 일련의 1987년 행정명령 제211호 - 부실 구리 광업 기업에 세금 감면을 부여하는 대통령령 제2027호 - 특정 지구를 1931년 2월 27일자 포고령 제369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광물 보호 및 환경중요지역으로 선포하는 일련의 2002년 포고령 제297호 - 환경천연자원부의 직접 감독 및 통제하에 팜팡가, 타를라크 및 잠발레스주 내 라하르의 영향을 받는 강 및 제방부지를 환경중요지역 및 광물 보호로 선포하는 일련의 1999년 포고령 제66호를 철회하는 일련의 1999년 포고령 제183호 - 1984년 지시 공문 제1387호 - 공화국법 제5092호 지열에너지, 천연가스 및 메탄가스법 - 대통령령 제87호 1972년 석유 탐사 및 개발법 - 대통령령 제972호 1976년 석탄개발법 - 환경천연자원부(DENR) 집행명령 제2010-21호(2010년 6월 28일) 1995년 필리핀 광업법으로 달리 알려진, 공화국법 제7942호의 개정 시행규칙과 규정 - 공화국법 제7160호 1991년 지방정부법 - 공화국법 제11054호 무슬림 민다나오 방사모로 자치구

	<p>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르디예라 행정구 창설에 관한 일련의 1987년 행정명령 제220호- 에너지부 공고- 환경자연자원부 (DENR) 집행명령, 메모 명령 (Memorandum Orders) 및 메모 회람 (Memorandum Circulars)- 광산 · 지구과학국 메모 회람 (Memorandum Circulars)
--	--

분야	:	농업
하위 분야	:	쌀 및 옥수수 산업
산업분류	:	ISIC 0111 곡류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작물의 재배 ISIC 153 분말곡물 생산품, 전분 및 전분 생산품, 그리고 조제 동물 사료 제조업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조치내용	:	<p>외국인, 외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협회, 파트너십 또는 회사는 다음 조건에 따라, 쌀 및 옥수수 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p> <p>가. 그 수행에 외국인 투자의 시급한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한 투자가 무역을 제약하는 독점이나 결합을 촉진하는 분명하고 실재하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p> <p>나. 외국인, 협회, 회사 또는 파트너십이 필요한 재무 역량과 기술적 능력을 갖춘다.</p> <p>다. 외국인, 협회, 회사 또는 파트너십이 필리핀 정부에 수용 가능한 개발 계획을 제출한다.</p> <p>외국인 지분 참여와 관련하여, 그러한 지분의 최소 60퍼센트가 30년의 매각 기간 동안 필리핀 시민권자에게 이전되고, 필리핀에서 실제로 사업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이 기간이 기산된다.</p> <p>외국인 투자자는 그들의 개발 계획에 설정된 기간 동안 쌀 및 옥수수 생산과 재배를 목적으로 임대된 토지를 완전하게 개발한다. 다만, 그러한 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다만, 더 나아가 필리핀 정부는 사안별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p>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협회, 회사 또는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쌀·옥수수 산업 종사에 대한 승인 및 그 밖의 목적에 관한 일련의 1973년 대통령령 제 194호 및 그 시행규칙과 규정 - 공화국법 제8435호 1997년 농업·수산업 현대화법 - 행정명령 및 집행공고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필리핀은 다음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 또는 메커니즘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필리핀 정부가 인정하거나 이 협정이 발효된 시점의 상황으로 인하여 인정했어야 하는 투자 외의 투자, 그리고 나. 이 협정이 발효된 시점에 기술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했던 투자
조치근거	:	-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필리핀은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치 또는 메커니즘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조치내용	:	필리핀은 기술이전,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 또는 메커니즘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필리핀은 모든 서비스 분야 및 하위 분야에 대한 투자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필리핀은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